

(앞 쪽)

제 호

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

업체명:

소재지:

대표자:

생년월일:

「비상대비예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점 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고 그 임무를 고지합니다.

임 무 고 지 내 용	임무기간
년 월 일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부 장 관 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 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직인	

----- 자르는 선 ----- (간인) -----

제 호

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수령증

다음과 같이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수령인	성 명	(서명 또는 날인)	생 년 월 일	
	주 소		업체의 장과의 관계	
	수령일시		수령 장소	

안 내 사 항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
1.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·방해·기피한 사람 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사람
2.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사실 및 임무가 적힌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않은 사람 또는 고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사람
3.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또는 전달하지 않은 사람(전달을 제때에 하지 않고 늦게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) 또는 통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사람

----- 자르는 선 ----- (간인) -----

1. 이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수령증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.
2. 임무고지서 발급권자는 이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